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함.

2)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7조의7제10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함.

3)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7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민간 수준(1년이상 3년미만 재직 15일 부여,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6일 부여)으로 확대함.

2) 연가 저축 시 소멸 시효 폐지(안 제7조의10)

- 이월 · 저축한 연가 일수의 소멸 시효 10년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9.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허가하되”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을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제7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사망의 일수란 중 “1일”을 “3일”로 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 ----- ----- ----- ----- ----- -----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4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6년 이상	21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7(특별휴가) ①·② (생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 -----	

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사용할 수 있으며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사용할 ---.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 36개월-----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⑪ ~ ⑭ (생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

----- 사용할 -----

⑨ (현행과 같음)

⑩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
명당 1일을 더한다)------

-----. 다만, 장애인인 자녀
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현행
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 저축한

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생략)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생략)	연가-----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 제5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락처	(044) 205 - 3357